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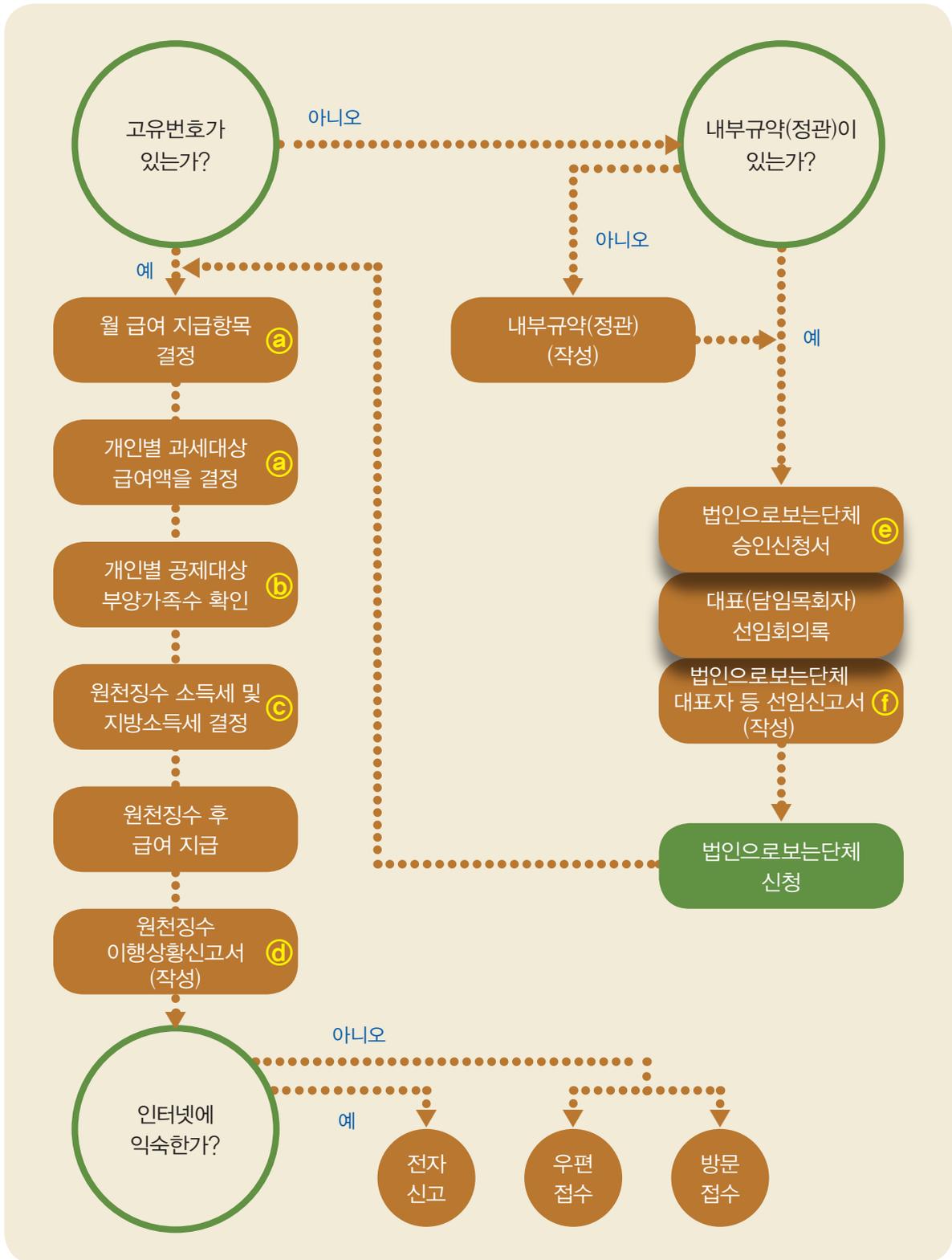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소득세를 신고 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한  
간편 가이드 자료이며,  
더 자세한 내역은  
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(www.cfnet.kr)를  
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

교회재정건강성운동  
[www.cfnet.kr](http://www.cfnet.kr)



#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흐름도



# 지급 항목별 분류 및 공제 금액 계산

소득세신고의 첫 단계는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항목을 분류하고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, 개인별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공제대상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됩니다.

## 1. 과세대상 월급여 금액 확인 a

급여지급액에서 다음의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.

-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(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)
- 월 10만원 이내 자녀양육비(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)
-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(본인명의 차량을 사용한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만 해당)

## 2. 공제대상 부양가족 인원수 확정 b

본인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해당합니다.

단,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계산시 (자녀수 - 1)을 추가합니다. (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)

- 배우자
- 20세 이하 자녀
- 60세 이상 직계존속
-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

## 3. 공제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 확정 c

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간이세액조건표에서 과세대상 월급여 금액과 부양가족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의 소득세를 공제합니다. 소득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합니다. (10원미만 절사)

사례 \_ 2012년 6월 급여분, 2012년 6월 30일 지급

- 급여내역 : 육아수당 10만원, 식대보조 10만원, 체력단련비 8만원을 포함한 194만원
- 가족(4인) : 본인, 배우자(근로소득 있는 학교 교사), 12세 아들, 3세 딸

(단위 : 원)

월급여액(천원) [비과세및학자금제외]		공제대상가족의 수										
이상	미만	1	2	3	4	5	6	7	8	9	10	11
1,700	1,710	14,860	11,490	3,810	0	0	0	0	0	0	0	0
1,710	1,720	15,080	11,700	4,020	0	0	0	0	0	0	0	0
1,720	1,730	15,290	11,910	4,220	0	0	0	0	0	0	0	0
1,730	1,740	15,500	12,120	4,430	1,050	0	0	0	0	0	0	0
1,740	1,750	15,710	12,330	4,630	1,250	0	0	0	0	0	0	0
1,750	1,760	15,920	12,540	4,830	1,460	0	0	0	0	0	0	0
1,760	1,770	16,130	12,750	5,040	1,660	0	0	0	0	0	0	0
1,770	1,780	16,340	12,960	5,240	1,870	0	0	0	0	0	0	0

● 월급여액 : 194만원-10만원(육아수당)-10만원(식대보조)=174만원

●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: 본인(1)+자녀 2인(2)+2인 이상 다자녀(1)=4인

월급여액 174만원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4인이 만나는 지점 1,050원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이며 소득세의 10%인 100원이 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입니다.

#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①

양식은 국세청(<http://www.nts.go.kr>) 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(<http://www.cfnet.kr>) 웹사이트에서 파일(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)을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.

제시된 사례의 경우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[별지 제21호 서식] (2012.2.28. 개정) (1 쪽)

➔①신고구분			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			➔②귀속연월		12년 6월
(매월)	반기	수정	연말	소득 처분	환급 신청			➔③지급연월		12년 6월
원천징수 의무자	법인명(상호)	(****교회)			대표자(성명)	(담임목회자 성명)			일괄납부 여부	여, (부)
	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(발급받은 고유번호)			사업장 소재지	(교회 주소)			사업자단위과세여부	여, (부)
									전화번호	(교회전화)
								전자우편주소	@	
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(단위 : 원)										
소득자 소득구분		코드	원천징수명세				⑨ 당월 조정 환급 세액	납부세액		
			소득지급 (과세 미달, 일부 비과세 포함)		징수세액			⑩ 소득세 등 (가산세 포함)		⑪ 농어촌 특별세
			④인원	⑤총지급액	⑥소득세등	⑦농어촌 특별세	⑧가산세			
개 사	근로소득	간이세액	A01	1	1,840,000	1,050				
		중도퇴사	A02							
		일용근로	A03							
		연말정산	A04							
		가합계	A10	1	1,840,000	1,050				
	퇴직소득	A20								
	매월징수	A25								

- ① 신고구분 : 6개월 단위 반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‘매월’을 선택
- ② 귀속연월 : 소득 발생연월을 기록하며, 반기 납부의 경우 반기 개시월(상반기는 1월)을 기록
- ③ 지급연월 : 지급한 연월을 기록하며 반기 납부의 경우 반기의 종료월(상반기는 6월)을 기록
- ⑤ 총지급액 : 근로소득의 간이세액란에 기입하되,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록하며 월 10만원 이하 식대는 제외

총합계	A99	1	1,840,000	1,050						
② 환급세액 조정 (단위 : 원)										
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			당월 발생 환급세액				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(⑬+⑭+⑯+ ⑰)	⑮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	⑰ 차월이월 환급세액 (⑮-⑰)	⑱ 환급 신청액
⑫전월 미환급세 액	⑬기환급 신청세액	⑭차감 간액 (⑫-⑬)	⑮일반 환급	⑯신탁재산 (금융 회사 등)	⑰그밖의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					
원천징수의무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 용을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※ 해당란에 “O” 표시를 합니다.			
							부표(4-5쪽)	환급(7쪽-9쪽)	승계명세(10 쪽)	
2012년 7월 10일							세무대리인			
신고인 (*** 교회 000) (서명 또는 인)							성명			
							사업자등록번호			



# 고유번호등록신청

‘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신청서’와 ‘대표자 선임신고서’를 작성한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합니다.

- 정관 또는 규약
- 담임목회자 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/제직회 의사록 사본
- 임대차 계약서(또는 전대계약서 : 전대 계약시 건물 주인의 전대동의서 첨부)

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작성사례 e

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01.3.31> (앞 면)

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		처리기간
		7 일
① 단체의 명칭	*** 교회	② 결성연월일 ( 창립일 )
③ 주사무소소재지	( 주소 )	④ (전 화 번호) ( *** - **** )
대표자 또는 관리인	⑤ 성명 (담임목회자성명)	⑥ 주민등록번호 (담임 목회자 주민번호)
	⑦ 주소 또는 거소 (담임목회자 주소)	⑧ (전 화 번호) ( *** - **** )
사 업	⑨ 고유사업	종교(기독교)의 보급 및 전파
	⑩ 수익사업	
단체의 재산상황		
구 분	⑪ 소재지(발행처)	⑫ 가 액
⑬ 부동산	*****	*****
⑭ 유가증권기타	*****	*****
합 계		*****
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
2012 년 00 월 00 일 신청인 (***교회 담임목회자 성명) (서명 또는 인)		
세무서장 귀하		
구비서류		수수료
1.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		없 음
2.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		

대표자 선임신고서 작성사례 f

[별지 제6호의 4 서식] (2001.3.31. 개정)

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(변경)신고서		처리기간
		즉 시
신고 단체	①명 칭 (*** 교회)	②고 유 번 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*** - 82 - *****
	③소 재 지 ( 교회 주소)	
신 고 내 용		
④선 임(변 경)연 월 일 (담임목회자 선임결의 공동의회/제직회 일시)		
⑤신 고 사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최초선임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		
최초 선임	⑥성 명 (담임목회자 성명)	⑦주민등록번호 (담임목회자 주민번호)
	⑧생 년 월 일 ****-**-**	⑨주소또는거소 (담임목회자 주소)
변경후	⑩성 명	⑪주민등록번호
	⑫주소또는거소	⑬생 년 월 일
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
2012 년 00 월 00 일		
신 고 인 (**교회 *****) (서명 또는 인)		

## Q & A

**고유번호증 고유등록번호의 가운데 두자리수가 89이다. 문제 없는지?**

가운데 번호가 89이면 법인으로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소득세 납부는 가능합니다.  
단,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.

**지방 중소형교회라서 수령하는 급여금액이 적은데도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가?**

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하므로 급여 금액이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 
2012년 간이세액표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월 급여 174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.

**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는지?**

원천징수세액의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법규 성격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며,  
다음해 2월 1년간 소득을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.

**급여 지급항목을 변경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가?**

교회에 소속되어 근로한 대가로 받으면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
**관할세무서코드와 계좌번호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?**

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([www.cfnet.kr](http://www.cfnet.kr))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*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징수절차를 일정별로 요약하면?**

**매월 급여 지급일** :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

**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** :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

**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** : 연말정산

**다음해 2월말** : 급여지급관련 지급내역(원천징수영수증)을 관할세무서 제출

**외부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강사료, 원고료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를 하는가?**

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원고료, 강사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 
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**부교역자인데 소속 교회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가?**

소속교회의 등록된 고유번호가 있으면 다음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 
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**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?**

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인원이 1인 이상이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소득세를 납부하면 관련자료가 관련 공단으로 통보되며,

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이 교회로 발송됩니다.

## 교회재정건강성운동

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, 기독교윤리실천운동, 나눔과섬, 바른교회아카데미,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에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.

전화 \_ 02.741.2793

팩스 \_ 02.741.2794

홈페이지 \_ [www.cfnet.kr](http://www.cfnet.kr)

이메일 \_ [protest@protest2002.org](mailto:protest@protest2002.org)

## 함께하는 단체들



### 교회개혁실천연대

주소 \_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-1번지 영남빌딩 205호

전화 \_ 02.741.2793

팩스 \_ 02.741.2794

홈페이지 \_ [www.protest2002.org](http://www.protest2002.org)

이메일 \_ [protest@protest2002.org](mailto:protest@protest2002.org)



### 기독교윤리실천운동

주소 \_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

전화 \_ 02.794.6200

팩스 \_ 02.790.8585

홈페이지 \_ [www.cemk.org](http://www.cemk.org)

이메일 \_ [cemk@hanmail.net](mailto:cemk@hanmail.net)



### 나눔과섬

주소 \_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-17번지 에프오빌딩 502호

전화 \_ 02.565.5886

팩스 \_ 0505.567.0691

홈페이지 \_ [www.nanumsem.kr](http://www.nanumsem.kr)

이메일 \_ [ngo114@gmail.com](mailto:ngo114@gmail.com)



### 바른교회아카데미

주소 \_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-8번지 청어람

전화 \_ 02.777.1333

팩스 \_ 02.319.1103

홈페이지 \_ [www.goodchurch.re.kr](http://www.goodchurch.re.kr)

이메일 \_ [gcacademy@hanmail.net](mailto:gcacademy@hanmail.net)



### 재단법인 한빛누리

주소 \_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서광빌딩 305호

전화 \_ 02.924.0240

팩스 \_ 02.924.0243

홈페이지 \_ [www.thebrightfoundation.org](http://www.thebrightfoundation.org)

이메일 \_ [thebrightfd@gmail.com](mailto:thebrightfd@gmail.com)